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8호 2022. 9. 5.(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1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2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2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30호(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동곡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3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공고) 28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
- 음식판매자동차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지원기반 마련으로 음식 판매자동차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 확대
 - 공동주택(아파트), 점용 가능한 도로 영업장소 확대
-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원기반 조성
 - 푸드트럭을 활용한 외식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 직권 폐업 조항 추가

- 해당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기간 종료 후에도 자진 폐업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직권폐업 조항 추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위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032-749-7972), 팩스(032-749-7959)
- 이 메 일 : dwg032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법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 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12호		2. 구분 (o표시)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O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O										
	o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위생정책과 담당 : 지방행정주사 강선희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이지혜												
4. 근거법령 등	o 「식품위생법」 제37조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자			입법 예고								
	이해관계자				입법예고								
	관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등	o 규제존속기한 :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o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신설규제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의 경우 축제 및 행사 등 2~3일 단기 영업신고 되는 경 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 하지 않는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규제개혁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 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8. 규제체계도	o 규제절차 (자진 폐업 및 소재지 이전 우선 권고후 미 이행 업소에 한해 시행) 민원인 영업신고 및 영업 ⇒ 영업종료 위생정책과 영업기간 종료에 따른 폐업 확인 ⇒ 폐업 미신고 업소 위생정책과 영업주 자진폐업 안내 ⇒ 미이행시 위생정책과 직권폐업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음식판매 자동차의 경우 축제 및 행사 등 2~3일 단기간만 영업신고 하는 경우가 많음
- ☐ 행사 종료 등 영업기간 종료 후에도 자진폐업신고 하지 않고 식품위생대장상에만 영업신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권폐업에 대한 조항을 지정하여, 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 하지 않는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함

나. 규제의 신설 필요성

- ☐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업 불가 했던 장소에 대하여 푸드트럭 영업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이지만, 푸드트럭 영업은 영업신고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직권폐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 해당없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 ☐ 규제 실현 가능하며 대체수단 없음

3.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함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별도의 사회적 소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가 큼

다. 규제영향 분석

- ☐ 기술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함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식품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일부) 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 설

- 1)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7조의 2)

가) 일정 반경 내에 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의2 제1항)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

나) 건물 높이 내에 도로 폭을 정함(안 제7조의 2 제2항)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정함(안 제7조의 2 제3항)

- 해당 건축물은 지상 2층 이상으로 제한함

나. 변경

1) 기존 조례 상 오류 수정 및 상위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가) 기존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당시 오류 수정

-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수정

나) 빈 건축물 감정평가자를 법인으로 정함(안 제10조)

- 감정평가업자를 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건축과

2) 연 락 처 : 전화 032-749-8587 FAX 032-749-8589

3)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5. 지하보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다음의 장 번호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을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 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 유소년스포츠단 지도자 징계 규정 신설 및 선수 탈퇴 규정 구체화를 통해 안정적인 스포츠단 운영 실현, 불분명한 용어와 문장 정비

3. 주요내용

- 가. 근거법규 현행화(안 제1조)
- 나. 징계 기준 신설(안 제7조)
- 다. 선수 탈퇴 규정 구체화(안 제10조)
- 라. 지도자 입상보상금 지급 기준 명확화(별표)
- 마. 기타 용어 및 불분명한 문장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2.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6층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749-7322, FAX 749-7289

○ E-mail : creator23@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 [붙임1] 개정 규정(안)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제2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 중 “운영을”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로, “중”을 “중에서”로 한다.

제7조 제목 “(감독·코치의 면직)”을 “(감독·코치의 면직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단이 해산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직권으로 면직할”을 “징계처분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1. 해임

2.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당
미지급

3.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
3분의 1 삭감

4. 견책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사유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스포츠단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선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의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이후 최초로 감독 또는 코치를 징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도자 입상보상금 지급 기준(제8조제4항 관련)

(단위: 천원)

대회기준	지급액			비고
	우승	준우승	3등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	1,000	700	300	

[별지 제7호서식]

연수구청 ()단 퇴단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입단일자	년 월 일		
주 소			
퇴단사유 및 건의사항			

상기 학생은 년 월 일자로 「연수구청 ()단」을
퇴단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인)
 보 호 자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제2조----- ----- -----.
제4조(인사위원회) 선수단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 -----.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감독으로 구성하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감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위원회에서는 스포츠단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삭 제>

제6조(감독, 코치의 임용) ① 감독 및 코치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이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감독·코치의 면직) 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감독할 수

제6조(감독, 코치의 임용) ①

- - -

-----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9 조

----- 중에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감독·코치의 면직 및 징계)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

감독할 수 없는 경우

② -----

----- 징계

처분을 할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없는 경우

6. ~ 7. (생략)

<신설>

제10조(선수의 탈퇴)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할 수 없다.

제11조(서약) 감독 및 코치는 별
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를,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단장에

6. ~ 7. (현행과 같음)

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
조제1항을 따른다.

1. 해임

2.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당 미지급

3.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 3분의 1 삭감

4. 견책

제10조(선수의 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스포츠단을 자발적으로 탈퇴
하고자 하는 선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퇴단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11조(서약) ----- 별
지 제8호서식
-----, ----- 별
지 제9호서식-----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수훈련 등) ① ~ ②
(생략)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계획을 행사 15일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관리)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경력증명서 발급 등) 단장은 입단 중인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 (선수훈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5일 전-----
-----.

제17조(위탁운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제18조(경력증명서 발급 등)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
-----.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2022-1325호		2. 구분 (o표시)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 설	O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O									
	o 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대상 심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o 소관부서 : 교육문화자치국 문화체육과 o 작성자 -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복 - 담 당 : 지방행정주사 노신균 - 작성자 : 지방행정서기 백서연										
4. 근거법령 등	o 국민체육진흥법 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o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지도자 및 선수										
6. 규제존속기한 등	o 규제존속기한 : 규정 공포일로부터 규정 폐지 시까지 o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스포츠단 운영 규정」 제10조(선수의 탈퇴)										
	현행 규정 내용					신설 규제 내용					
						② 스포츠단을 자발적으로 탈퇴 하고자 하는 선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할 수 없다.					
8. 규제체계도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팀 이적 등을 이유로 재입단 후 단기 내 퇴단하는 선수로 인해 기존 선수들의 의욕 저하 및 스포츠단 분위기 훼손, 예산손실 발생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재입단한 선수들 중 대다수는 기존에도 팀 이적을 위해 탈퇴한 후 새로운 팀에서의 출전 제한, 팀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단한 선수들이었음
- 좋은 조건을 내세운 입단 제의가 들어올 경우 퇴단과 입단을 반복하는 선수들로 인해 선수들의 사기 저하 및 예산 손실(유니폼, 경비 지원)이 발생함
→ 재입단 후 무분별한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스포츠단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유소년스포츠단 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 유소년스포츠단 선수의 자발적 탈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상기 규정이 미 개정될 경우 대체수단이 없음

3.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함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별도의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입단 규제를 통해 스포츠단 운영의 공정성·안정성 증진

다. 규제영향 분석

- 기술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선수단 소속감 강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재정적 집행가능성 및 능력 등)

- 유소년스포츠단 선수 운영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확립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동곡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동곡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09. 02.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동곡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번지 일원	6,217	건설부고시 제1966-2701호 (1966.8.31.)	조성계획 (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22. 09. 02.(금) ~ 09. 16.(금),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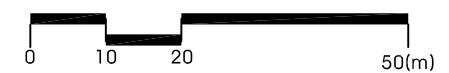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붙임 참조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010 010 010 010

■ 총괄수량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공 원	6,217.0	60	
시설부지			1,697.0	-	
도로 광명장	소 계		984.0	7	
	광장	광 장	174.0	-	
	도로	도 로	810.0	-	
	①	파고라-1	-	1	
	①	볼라드	-	6	
	소 계		231.0	6	
유시 시설	가	휴게소	231.0	-	
	가-1	휴게소-1	(145.0)	-	
	가-2	휴게소-2	(86.0)	-	
	②	파고라-2	-	1	
	③	파고라-3	-	1	
	④	평의자	-	4	
	소 계		385.0	4	
유시 시설	다	어린이놀이터	385.0	-	
	⑤	조깅돌이시설	-	1	
	⑥	그네	-	1	
	⑦	시소	-	2	
	소 계		67.0	4	
운시 시설	마	체력단련장	67.0	4	
	⑧	체력단련시설	-	4	
	소 계		30.0	1	
편식 시설	⑨	화장실	30.0	1	
	소 계		-	38	
관리 시설	⑩	공원통	-	38	
녹지	소 계		4,520.0	-	

■ SCALE : A1=1/500, A3=1/1,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현 금고 약정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금고의 수 : 1개의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 체결 진행

3.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거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9. 19.(월) ~ 9. 23.(금)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032-749-7532)
- 열람서류 : 2019~2021 세입·세출결산서, 2022 세입·세출예산서 등
※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 미승인 상태로 예산서로 대체될 수 있음.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10. 4.(화)~10. 5.(수)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제출부수 : 제안서 12부 (원본1, 사본1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금고지정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2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 참조
- 평가세부항목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총자본비율」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BIS 자기자본비율과 일치해야 함.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별표 2]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의평가
- 구금고 지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인 서류 심사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불응 시에는 평가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포기 또는 금고약정의 지연 등 새로이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OCR센터 구축, OCR수납 처리비용, ETAX 등), 인수인계 비용 등은 구금고 부담으로 함.

11. 기 타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은행별 제안서 12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연수구 세무2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연수구 세무2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로 문의(☎032-749-7532)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소 계	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1	
	소 계	7	
		6	
		4	
		2	
		2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21	
	소 계	7	
		5	
		6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4	
	소 계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소 계	5	
		2	
6. 그 밖의 사항	소 계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소 계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I. 금고 지정 개요	1
II.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9

I. 금고 지정 개요

1. 약정기간
2. 금고의 수
3. 구금고의 주요업무
4. 지정방법
5. 신청자격
6. 신청절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8. 심의·평가 방법
9.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10. 비용부담
11. 손해배상
12. 기타사항
13. 금고지정 추진일정

1.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2.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3. 구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4. 지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 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 체결 진행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거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2. 9. 19.(월) ~ 9. 23.(금)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비치서류 : 2019~2021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 ※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 미승인 상태로 예산서로 대체될 수 있음.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정보에서 상시 열람 가능
 - ※ 금고 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5.(수)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 지정 신청서 1부 (원본 1부)
 - 금고 지정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2부 (원본 1부, 사본11부)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추가제출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아래 평가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자료(제안서 내용 및 증빙서류) 각 1부

- 평가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세부항목 3-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3-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중
 - 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실적
- 평가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중
 -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세부항목 6-가. “탄소중립 기여도” 중
 - 1) 탈석탄 선언 여부
 - 3)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평가 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 제안서 접수 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연수구청 세무2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2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5-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밀봉한 후,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 내 해당 평가항목란에 부착하여 제출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1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6. 그 밖의 사항	소 계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 평가세부항목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총자본비율」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일치해야 함.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의 일반원칙

-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및 심의·평가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자료 요구 및 대면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불응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의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구금고 금융기관이 변경될 경우, 약정체결 후 인계·인수를 위하여 인계인수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존·신규 구금고 금융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약정체결 후 합동근무 실시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금고와 협조하여 수납 세입금 집계 및 정산지연, 구민의 세입금 납부불편 초래 등 세입 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일체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후 약정체결·인수인계 비용,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OCR센터 구축, OCR수납 처리비용, ETAX 등)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11. 손해배상

- 약정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액 =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3년~2026년까지 연수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1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 5%

* '21년 평균잔액 :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평균잔액

-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제안서 내용대로 구현하여 2023. 1. 1. 부터 현 수준으로 정상 운영되어 함,
 -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 지연배상금 = [21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의 합계] × 지체일수 × 연15%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동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이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금고지정 공모 시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손해배상액 =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3년~2026년까지 연수구에 출연할 금액의 합계 + ('21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 4)] × 15%
 - * '21년 평균잔액 :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평균잔액

12. 기타사항

- 금고지정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요망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연수구 세무2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연수구 세무2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연수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총괄팀 (☎ 032-749-7532)

13. 금고지정 추진일정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2022. 10월 중
- 금고 지정 : 2022. 10월말 ~ 11월 초
- 금고 약정 체결 : 2022. 11월 중
-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필요시) : 2022. 11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 구금고 지정 신청서류 등을 작성함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은 구에서 제시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를 명확히 숙지하고, 신청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시스템·
시설 설비계획 등은 당해 신청 법인의 실정에
맞게 작성함.

신청서(제안서) 등 작성방법

1. 전제조건

-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시스템·시설 설치 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 없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작성.

2. 작성요령

- 구금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는 공문 첨부물로 제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평가항목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색인표 부착.
- 제안서는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용지규격을 「A4 중」 으로 작성하여 좌철. (A4 이외에는 A4 크기로 접음)
-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 및 외국어는 ()안에 병기하고, 서식이 제시된 내용은 서식대로 작성하며,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식 하단에 기재.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표기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으면 소숫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 기준일은 “2022. 8. 31.”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2020~2022년)기간 동안의 실적을 작성하며, 계획은 향후 금고약정기간 (2023~2026년) 동안의 계획을 작성하되, 항목별로 별도 작성년도, 기준시기 등이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중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1) 구에 대한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은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 내 해당 평가항목 란에 부착.
- 평가항목별 내용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고, 평가항목 간 중복작성 불가 (평가내용을 2 이상의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임의 배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고, 특히 추진실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분리하여 평가항목 순서대로 색인표를 붙여 편철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인”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연수구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점		전 화 번 호	☎
	지역사무소 (인천 연수구)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1. 금고 지정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12부(원본1부, 사본11부)
 2. 각서 1부.
 3. 사용인감확인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 정관(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22년 10월 일

은행장 ○ ○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2022. 10. .
관리번호 12 - (원본) (사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제안서

○ ○ 은 행

I 신청목적과 금고운영계획

- 구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취지를 간략히 기재
- 지정 시 금고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II 신청 법인 현황

1.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 (인터넷 도메인 기재)

2. 법인개요

가. 연 혁

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 자본금(납입자본금) 현황 (2022. 8. 31.현재)

(단위: 백만원)

자 본 금	주 요 주 주 현 황 (1% 이상)			비고
	주주명	직 업	소유비율(%)	
	대주주부터 작성			

※ 최다 출자자 순으로 기재

라.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성 명	직 책	주요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마. 점포 및 직원현황 (2022. 8. 31.현재)

(단위: 개소, 명)

구 분	점 포 수			직원수			비고
	계	지 점	출장소 등	계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인 천							
연수구							

바. 전산실 현황 (규모, 인원, 주 전산기종 등) (2022. 8. 31.현재)

사. 재무상태현황 (2020, 2021, 2022. 6월말)

○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증빙자료 별도첨부(#1)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III 심의 · 평가 서류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신용평가기관

기관별 분류 평 가	Moody's		S&P		Fitch		비고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평가결과							
평가일자							

2) 국내신용평가기관

기관별 평 가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비고
평가결과				
평가일자				

- 주) 1. 2022. 8. 31. 기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현황
 2. 국외신용평가는 Moody's, S&P, Fitch IBCA의 평가에 한함
 3. 국내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하며, 기업신용등급[Issuer (credit) Rating)] 기준임
 4.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첨부(#2)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항 목	비 율			산 출 근 거	비고
	2020년	2021년	2022.2/4분기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모든 자료는 대외 공표된 자료를 말하며, 각 항목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해당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증빙자료 첨부(#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밀봉한 후 인감 날인한 다음 제안서 내 해당 평가항목에 부착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정기예금 예치기간	제안 금리			비 고
	계 (A+B)	COFIX금리(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1년 이상	%	%	%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하는 “COFIX 금리(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2. 8. 31. 기준으로 작성
 3. COFIX 금리(잔액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 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잔액기준)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나. 연수구 공금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	비 고
공금예금	%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공금예금이란 연수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등 연수구 사업자번호(구의회, 보건소, 각 행정복지센터 등 포함)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함.

다. 연수구에 대한 대출금리

1) 일시차입 시 적용금리

구 분	제안금리(가산금리)(%)	비 고
1년 기준 차입금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91일 CD유통수익율’을 기준금리로 하여 가산금리를 제안금리에 표기

3. 향후 연수구 일시차입(일괄여신한도 내 “공공일반자금 대출” 한도 거래 의미)시 적용 대출 금리를 작성

- 약정체결은 ‘91일 CD유통수익율 + 가산금리’로 함.
- 대출한도는 예산서에 명시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함.
- 차입 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지방채 인수 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여 가산금리 제시

(단위: %)

기 간	제안금리(가산금리)	비 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국고채 3년 기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국고채 5년 기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국고채 10년 기준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약정체결은 ‘국고채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로 함.

3.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하며, 중도상환 가능해야 함.
(해지·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 연수구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정기예금 예치금리	만기 경과시 제안금리		비 고
		3개월이내	3개월이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	%	정기예금 제안금리 대비 비율(100% 등)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 1년미만	%	%	%	
1년이상	%	%	%	

주)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2.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제안금리는 가목의 ‘정기예금 예치금리’ 대비 비율을 기재하되, 3개월 이내,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구 분	제안금리(A+B)	기준금리 (A) 기업MMDA(잔액기준)	가산금리 (B)	비 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	%	%	예치기간 및 금액제한 없음

주)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으로 하며 예치기간 및 금액 제한없이 '22. 8. 31. 기준으로 작성
3. 제안금리 작성시, 제안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하며, 제안시점의 제안금리에 관한 자료 제출
- 4)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 5)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3. 구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1) 연수구 관내 지점(영업점) 현황

(2022. 8. 31.현재)

연번	영업점 개설내역		직원수 (명)	비고 (신설 및 폐업일자 기재)
	영업점명 (지점·출장소명)	소재지		
합계	○○개소			
	○○지점			
	○○출장소			

- 주) 1. 동별(옥련1·2, 선학, 연수1~3, 청학, 동춘1~3, 송도1~5동) 순서로 기재
 2. 영업점명은 지점, 출장소 순으로 유인점포만 기재
 ☞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2021년 12월말 등록된 점포수를 기준으로 작성
 하되, 2022. 8. 31.까지 신설 및 폐업된 점포수를 가감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첨부(#4)
 ☞ 2022년도 신설 및 폐업 점포의 경우 신설 및 폐업일자 비고란에 기재
 3.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2) 연수구 관내 무인점포 현황

(2022. 8. 31.현재)

연번	종류	소재지	비고
합계	○○개소		
	○○점포		

- 주) 1. 무인점포란 은행 영업점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2대 이상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독립된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장소를 말하며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당해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2. 동별(옥련1·2, 선학, 연수1~3, 청학, 동춘1~3, 송도1~5동) 순서로 기재
 3.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4. 은행내부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5)

3) 연수구 내 ATM 설치 현황

(2022. 8. 31. 현재)

연 번	종 류	소 재 지	ATM 대수	비 고
합 계	○○개소		총 ○○대	
	○○개소		○○대	
			○○대	

- 주) 1.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입금과 출금 기능을 수행하며, ATM은 CD기능 외에 통장을 이용한 거래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입금거래 등도 가능한 무인단말기를 말함.
2. 동별(옥련1·2, 선학, 연수1~3, 청학, 동춘1~3, 송도1~5동) 순서로 기재
3.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브랜드 및 타사 제휴기기, 편의점에 설치된 기계는 제외)
4.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5.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6)

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처리 능력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수납건수	수납액	비고
계			
2020년			
2021년			
2022. 8월말까지			

- 주) 1. 연수구 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수납 처리 실적으로, 전자납부(인터넷 및 무인자동 수납 등) 실적 포함, 증빙자료 첨부(#7)
2. 실적자료는 연수구에서 제공(실적자료 필요 시 공문요청 바람)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1)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납부편의 추진실적

- 최근3년간(2020년 ~ 2022. 8. 31.) 우리구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역

2) 향후 납부편의 증진방안

-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등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 빅데이터, AI, 모바일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 납세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외국인 등) 납세편의 증진 방안
- 노동쟁의,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
- 기타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편의 증진 방안 및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 계획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대출종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고
		대출건수	대출금액	평균이자율	
계					
2020년					
2021년					
2022.6월말까지					

- 주) 1. 총여신액은 해당 연도 말과 2022년 6월말 잔액 기준
 2. 인천광역시 소재 점포에서 취급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기준
 3. 한국은행(또는 금융감독원) 제출보고서 **사본첨부 (#8)**(개인정보 보호)
 4.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9)**
 ☞ 한국은행(또는 금융감독원) 제출보고서 제출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사업장 소재지 표시하고 동별 순서로 기재(**개인정보 보호**)
 ※ 대출종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
 개별 중소기업 대출, 운영자금 등
 5.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2) 중소기업·소상공인 향후 대출 및 지원계획(2023~2026년)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및 확대방안
- 기타 대출 확대방안 등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규모	평균이자율(%)	업체당 지원한도	기 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향후 제안금리로 관련부서와 세부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시 운영하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및 향후 개발예정인 전산시스템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발전방향 등을 제시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e-호조시스템과 e-뱅킹과의 연계 등 세출업무분야 시스템 구성도 포함)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 구와 인천광역시, 구와 직속기관 및 각 행정복지센터 간의 연동시스템 구성도 제시 등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23년 구축 완료 예정이므로, 세출e-뱅킹, 금고업무통합관리 등 연계되어있는 시스템의 개편에 따른 기술지원 계획
- 시금고와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추가작성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 공채매입 업무처리방안
 - 과오납금 환급(구세 포함)에 대한 세입금·집계정산 등 처리방안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경험

○ 금고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2019년~2022년)

(단위: 개)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주) 1. 2019. 1. 1.~2022.8.31.까지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수행한 실적 기재
 2. 1개 자치단체 당 1회계만 표기
 3. 1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중복 수행할 경우, 주된 회계(일반, 특별, 기금 순)기준으로 기재
 4. 금고약정서 사본 첨부, 증빙서류 첨부(#10)

○ 세부내역

연 번	자치단체명	회계명	금고계약기간	비 고
1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순으로 작성	회계명 구분표시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 취급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예시) '19. 1. 1. ~ '22. 12. 31.	약정서 사본첨부

※ 최근 순으로 작성

2) 구금고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구금고 지정 시 금고업무 전담조직·인력구성 및 직원 교육훈련계획 등

○ 구금고 지정 시 은행 영업점의 행정기관(연수구 산하) 입점(신설)계획

기관명	입점 시기	점포개설계획		직원수 (명)	비 고
		점포명(지점명)	소 재 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 전산보안시스템(HW, SW)도입 및 운영방안

- 전산시스템 설치·네트워크·보안·백업 시스템 운영 및 보강계획, 보안(방화벽 포함)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방법, DR센터 운영계획 등
- 전산보안시스템 자원(H/W, S/W)의 유지보수(기술, 비용부담 등) 계획
- 구금고(개인·금융정보 보호 포함)에 대한 보안계획 및 이행계획 등
 - 인적보안, 위험관리, 보안감사, 전산실과 사무실 등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운영보안, 전자금융거래보안 등

2)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전산처리능력

-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전산시스템 실태 및 향후 설치운영계획 등

3) 전산보안시스템에 대한 외부기관의 보안 인증 현황

- 정보보호분야 인증 현황은 국내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사항만 인정

4) 향후 안정적인 구금고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운영계획 및 개선·발전방향 제시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1) OCR센터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은 가능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각 분야별 설치일정(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인력 운영(소요 인원 등), 소요기간, 비용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OCR센터는 전국 수납대행금융기관이 수납한 인천시 세입금에 대해 OCR, 비OCR 고지서의 집계 및 대사, 징수기관별, 회계별 수납집계표 작성 및 영수필 통지서 분류작업 등 일체의 관계시스템과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를 의미함.

2) 향후 연수구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및 발전 방향 등을 제시

- 기타 금융결제원과의 연계계획, 시금고와 연수구 금고간 연계처리 방안, 수납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처리방안 등 포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2020년 ~ 2022. 8. 31.)

○ 총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 고
계			
2020			
2021			
2022.8월 말까지			

○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사 업 명 (관련행사 등)	수혜대상 (기관, 단체, 개인등)	지원내역 (금액)	비 고 (지원목적, 사유등)
합 계		○○건			
2020	소계	○○건			
2021	소계	○○건			
2022.8	소계	○○건			

주) 1.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연수구 지역 내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부(지원)한 현금·현물, 봉사 등을 총망라하여 기재(현물 등은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울 경우 내역 기재)

예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원, 환경보전 및 문화유산 발굴, 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2. 연도별로 구분 작성,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 첨부(#11)

3. 농협(수협)은행 등은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1) 구에 대한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2023~2026년)

※ 밀봉 후 인감날인 한 다음 제안서 내 해당 평가항목에 부착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출 연 금 액	비 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주) 1. 연도별 출연금액을 명확한 금액으로 기재

※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인정하고, 향후 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됨.

2.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등은 제외

6. 기타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1) 탈석탄 선언 여부

탈석탄 선언여부	선 언 일	비 고

주) 1. 작성기준일 : 2022. 8. 31.

2. 탈석탄 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가 선언식, 기자회견 등 공개적·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언한 경우 작성

3.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관련 언론보도 등)(#12)

2)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 석탄발전 투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투자금 현황	투자금액(잔액)	비 고
계			

주) 1. 작성기준일 : 2022. 8. 31.

2. 석탄발전 투자금의 범위 : 석탄화력 PF대출, 회사채인수, 보험지원, 지분투자, 일반대출 등

3. 석탄발전 투자금 현황의 범위는 국내로 함.

○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투자금 현황	이행계획 내용	이행계획 금액	비 고
계				
2023				
~				
2026				

주) 1.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은 은행의 회수계획이며 범위는 국내로 함.

2. 석탄발전 투자금의 범위 : 석탄화력 PF대출, 회사채인수, 보험지원, 지분투자, 일반대출 등

3)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2022. 8. 31. 현재)

연 번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 입 일	비 고
계	총 ○ 개		

- 주) 1. 금융기관(금융지주 포함)별 가입 현황
 2.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범위 : TCFD, CDP, UNEP FI, PCAF, 적도원칙, SBTi, Net Zero Banking Alliance 이니셔티브
 3.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13)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연 도	신 ·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현황 (SPC 투자 횟수)	비 고 (총사업비/FI 투자금액)
계	총 ○ 개	

- 주)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함
 2. 2019. 1. 1. ~ 2022. 8. 31.까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한 횟수 기재(국내에 한함)
 3. 농협(수협)은행 등은 지역조합(농협·수협 등)과 구분 작성
 4.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14)

2022. 10. .
관리번호 12- (원본) (사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제안서 증빙서류

○ ○ 은 행

신청 및 증빙서류 목록

※ 신청 및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심의·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연번	항 목 별	제 출 내 용	비고
1	금고지정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신청서
2	제2장 2-사 재무상태현황	○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제안서
3	제3장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 신용평가서 등 (#2)	
4	제3장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시 자료 (#3)	
5	제3장 3-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관내 영업점 현황 관련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입증자료 (#4) ○ 금고지정 안내서 무인점포 기준에 따른 관내 무인점포(은행명의) 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 등록된 입증자료 (#5) ○ 관내 ATM(은행명의) 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 등록된 입증자료 (#6)	
6	제3장 3-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처리 능력	○ 연수구 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수납 처리실적(건수, 금액) 입증자료 (#7)	
7	제3장 3-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제출보고서 사본 (#8) ○ 은행내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증자료(#9) - 한국은행 제출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8	제3장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2022. 8. 31.현재 금고약정 체결 중인 금고 약정서 사본 (#10)	
9	제3장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관련 사업별 세부 입증자료(영수증 등) (#11)	
10	제3장 6-가 탄소중립 기여도	○ 탈석탄 선언 관련 입증자료 (#12)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관련 입증자료 (#13)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관련 입증자료 (#14)	

각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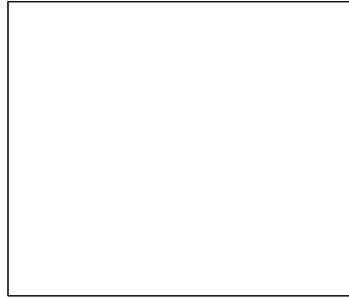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적격 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 제안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추후 금고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약정포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2. 10. .

○ ○ ○ 은행
은 행 장 ○ ○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 금융기관의 지배인인 ○○○ 지점장 · 팀장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가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2년 10월 일

○ ○ ○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